Republic Act No. 9501 May 23, 2008

중소규모의 기업의 발전과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기업을 위한 대헌장"으로 알려진 개정 Republic Act No.6977 을 위의 목적에 맞게 개정한 법

목차

SECTION 1. 명칭

SEC. 2. 정책의 선언

SEC. 3. 수익자로서의 중소기업(MSMEs)

SEC. 4. 정부지원의 수급자격

SEC. 5. 지도 원칙

SEC. 6.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계획(MSMEDP)

SEC. 7-A. 구성

SEC. 7-B 권한과 기능 -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SEC. 8. 위원회 사무국으로의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사무국(bureau)의 지정

SEC. 9. 할당

SEC. 10. 현존하는 중소기업 프로그램과 기관들의 합리화

SEC. 11. 소기업 보증 및 융자 법인의 창설.

SEC. 11-A.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SEC. 11-B 법인의 구조와 권한

SEC. 12.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의 자본구성과 자금제공

"SEC. 13.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의 개발 목표

"SEC. 14. 벤처 캐피털과 소액금융신탁기금

SEC. 15. 초소형, 소형, 중형기업으로의 의무적 신용자원의 배분

SEC. 16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주간(week)

SEC. 17. 우수 중소기업(MSME)에 대한 대통령상.

SEC. 18. 국회 감독위원회

SECTION 1. 개정된 Republic Act No.6977의 Section 1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SECTION 1. *명칭*- 본 법은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으로 인용한다"

SEC. 2. 본 법 Section 2는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SEC. 2. *정책의 선언*- 중소기업(MSMEs)이 더 많은 고용의 원동력과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리하여 국가의 자급자족의 산업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이 경제 모든 부문, 특히 농업의/농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MSMEs)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하고, 지원하고, 강화하고, 장려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중소기업(MSMEs)의 구체적 필요를 인지하고, 기업을 증진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MSMEs)의 설립을 장려하고, 그들의 생존 능력(viability)과 성장의 계속을 보증하여 지방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a) 기업 내 교육과 노동자 기술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대하고 확장한다 ;

"b) 자금원(sources of funds)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c) 정부계약 및 관련 인센티브와 우선권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

"d) 중소기업(MSMEs)의 융자 프로그램을 보완 및 보충하고, 소기업들이 따르기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엄격하고 부담스러운 담보 요건을 폐지한다;

"e) 신용공여제도(credit delivery system)의 보호와 안정성을 위한 보호조항을 제정한다;

"f)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가 도처의 중소기업(MSMEs)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킨다;

"g) 공통 서비스 시설 설립을 장려함으로써 대기업과 소기업간의 연계를 증진한다;

"h) 중소기업(MSMEs)의 육성에 있어, 산업 단체와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만한 민간의 자발적 조직의 증진과 관여를 통하여 민간부문을 파트너로 삼는다.

"i) 중소기업(MSMEs)의 발전이 미치는 병목효과와 환경적 영향은 물론, 경제적 기여에 관하여 감독하는 피드백 및 평가 기구의 설립을 통해 균형과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

SEC. 3. 개정된 동법 Section 3 은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3. *수익자로서의 중소기업(MSMEs)*

중소기업(MSMEs)은 개인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조합(partnership)이든, 주식회사이든 간에 산업, 농업관련사업, 또는/혹은 서비스에 관여하는 어떠한 경제활동이나 기업경영으로 정의되는데, 대출금(loan)으로 발생하는 것은 포함하나 특정 경제주체의 사무소나 공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 전 자산의 가치가, 다음의 카테고리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초소형기업:	없음-	P3,000,000
소형기업:	P3,000,001 -	15,000,000
중형기업:	P15,000,001-	P1000,000,000

"위의 정의는 인플레이션과 다른 경제지표를 고려한, 본 법 Section 6 에서 정하는 중소기업발전(MSMED)위원회의 심사와 조정 또는 관련부문 기관의 권고를 따른다. 위원회는 고용자수, 자기자본(equity capital) 그리고 자산 규모와 같은 다른 변동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체로서의 중소기업(MSMEs)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문의 구체적 필요에 따라 다양화

된 계획과 개별화된 프로그램들을 확보하여, 중소기업(MSMEs)으로 하여금 한 카테고리를 벗어나 다음의 혹은 더 높은 카테고리로 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SEC. 4. 개정된 본 법 Section 4는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4. *정부지원의 수급자격.*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상담 인센티브 등을 얻기 위해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 기존의 법에서 등록한 관할 기관에서 적절하게 등록되어야 한다: 위에서 한정된 초소형 기업의 경우, 시청에서 혹은 시 회계원(treasurer)에 의한 등록은 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기업이든, 조합이든 필리핀 국민이 100% 투자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사법 주체라면, 최소 60%의 자본 또는 사외주식(outstanding stocks)이 필리핀 국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c) 직업 실습을 포함한 제조업(industry), 무역업(trade), services(서비스업), 관광 관련사업 설립, 그리고 농업관련 사업과 같은 경제 주요부문의경제활동에 있어, 이 법의 취지는 제조, 가공, 그리고/혹은 농산물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된다.

"d) 지점, 자회사 또는 대기업의 부,국,과(division)이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이 요건은 중소기업(MSMEs)이 하도급계약을 맺는 것이나 대기업의 가맹점이 되는 것, 또는 다른 중소기업(MSMEs)과의 협력활동을 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본 법 다음 조항에 규정된 소기업조합(SB Corporation) 프로그램은 오직 선의의 중소기업(MSMEs)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중소기업(MSMEs)의 이사,임원 또는 대리인이 이 법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 또는 허위표시를 행하였다면, 즉시 수익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며, 다만 현행법에 따르는 행정상,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격있는 중소기업(MSMEs)은 정부와 그 부처, 그리고 부서에 매년 공급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총 조달가치의 최소10%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예산관리부(The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는 정부기관이 요건과 절차를 잘 따르는지를 감독하고, 6개월 단위로 MSMED 위원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1년 단위로 적절한 위원회를 통해 필리핀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SEC. 5. 개정된 본 법 Section 5는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5. 지도 원칙 - 중소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국가

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x x x

"c) 정부정책 협력

일관성 있는 목표의 성취를 위해 각 기관은 협력해야 한다. 특히 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재무부(Finance), 행정관리예산국(Budget and Management), 농림부(Agriculture), 농지개혁부(Agrarian Reform), 환경 자원부(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노동 고용부(Labor and Employment), 교통운수부(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공공사업부(Public Works and Highways), 과학기술부(Science and Technology), 내무부 및 지역정부(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국민경제 및 관광 발전 공사(the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필리핀 정보국(Philippine Information Agency)과 필리핀 중앙은행(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그들의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 기관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화를 통해 중소기업(MSMEs)에 필요한 지원과 보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x x x."

SEC. 6. 신설 section인 본 법 Section 5 다음에 추가된 Section 6은 다음과 같다 :

"SEC. 6.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계획(MSMEDP)*

대통령은 중기의 필리핀 발전 계획(MTPDP)의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산업부(DTI)가 마련한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6년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민영 부문의 자문을 거쳐 세워야 하며, 6개월마다 비준되고(validated) 갱신되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초소형 기업의 신용경제 계획을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SEC. 7. 본 법 Section 6는 Section 7로 변경되었고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

"SEC. 7.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MSMED) 위원회*

Republic Act No. 6977 에서 설립하고, Republic Act No. 6977 과 8289 에서 개정된, 기존 중소기업 발전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중소기업(MSMEs)의 성장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이 법에서 선언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강화되어야 하며, 이제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MSMED) 위원회로 정한다. 이 위원회는 무역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부속시키고 이 법 승인 후 60 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x x x."

SEC. 8. 개정 Section 7은 Section 7-A로 변경되었고, 다음과 같이 추가 개

정되었다:

"SEC. 7-A. *구성*

- 위원회는 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성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부재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 농림부 장관;

"b) 내무부 장관 및 지방정부;

"c) 과학기술부 장관;

"d) 관광부 장관;

"e) 소기업조합장 ;

"f) 중소기업 부문에서 Luzon, Visayas, Mindanao 를 대표하는 3 명의 대표자;

"g) 노동자 부문에서 공인된 노동단체에서 추천받은 1명의 대표자;

"h) 민간은행 부문의 대표자; 지방은행연합회; 그리고 필리핀 은행연합회(BAP)에서 교대로 수행한다.

" 임명된 위원회 모든 구성원들은, 직권에 따른 구성원을 제외

하고, 3년의 임기를 역임한다.

사임하거나 사망 또는 정당한 이유로 해임된 구성원을 대신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은 만료되지 않은 기간동안의 남은 임기만을 역임한다.

"위원회내의 사적 부문의 구성원들은 매 회의마다, 매년 최대 24 번, 이천 페소(P2,000)의 일급을 받으며, 위의 일급은 MSMED 위원회에 의해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어떠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기관, 지방공공단체 공무원단체 또는 사적부문기관의 참석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기관이나 민간부문기관이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방식으로 중소기업(MSMEs)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그러하다.

"위원회는 최소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2 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내에서 또는 지정된 상임대표들 중에서 선출된 5 명으로 업무집행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는데,위원회가 수여한 구체적 권한의 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회의 에 관하여서 위원회를 대리하고 대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SEC. 9. 개정된 동법 Section 8은 Section 7-B로 변경되었고,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 SEC. 7-B 권한과 기능 -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개발(MSMED) 위원회는 아래의 권한과 의무, 기능을 갖는다.

"a) 중소기업(MSMEs)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과 기회를 확립한다;

"b) 대통령과 의회에 중소기업(MSMEs)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권고한다;

"c) 중소기업(MSME) 발전과 관련 있는 여러 정부와 민간부문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한다;

"d) 중소기업(MSMEs)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부기관의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원의 경제부 위원회와 하원의 소기업 및 기업 개발 위원회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에 변화를 권고한다. 여기에는 규정과 규제를 단순화하는 노력뿐 아니라, 중소기업(MSMEs)에 관련된 등록, 자금 조달, 그리고 다른 활동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도 포함하며, 그 결과는 의회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e) 해당 부문 개발을 위해 준비된 여러 기관의 절차를 감독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 단체/협회뿐 아니라 지방행정단위와 내무부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MSMEs)의 개발에 대한 감독이 포함된다;

"g) 관련 정부기관 원조에 관한 협력의 체계 및 적절한 정책 제

공을 위해서, NEDA와 필리핀 원조 프로그램조정 위원회와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소기업(MSMEs)의 발전을 위한 지방과 외국의 자금제공을 타진하기 위함에 있어 적절한 정책과 협력체계를 제공한다.

"h)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에서 관련 정부기관들을 지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MSMEs)의 생산성과 생존능력을 증진시킨다. :

"1) 비즈니스 교육 과정, 기술자와 숙련된 노동자를 위한 기술 교육 그리고 계속적인 기술 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2) 노사 지침과 중소기업(MSMEs) 고용인들의 근무환경의 지원과 향상에 관한 조항

"3) 제품의 품질/ 신상품 개발 그리고 생산품의 다양화에 관한 지도와 원조 조항;

"4) 향상된 생산 방법의 도입 그리고 신상품 개발과 고유자원의 이용증대를 위한 적절한 기술의 상업화에 관한 지도와 원조 조항;

"5) 지역 수요-공급 정보, 산업과 지방의 분석표(profiles), 해외 마케팅 프로모션, 국내 시장 연계 그리고 예컨대 공유/공동 보세창고, 곡물창고, 농산물 가공시설, 제빙 공장, 냉장창고, 공동 트럭수송시설 등과 같은

공용 서비스 시설을 통한 중소기업(MSMEs) 제품의 마케팅과 유통에 관한 원조 조항;

"6) 간소화한 복수기관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credit)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리스와 벤처 캐피탈과 같은 다른 방식의 자금조달의 발전을 장려하고; 효과적인 신용보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신용기록과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대부 인가 메커니즘을 분산화하는 등 신용보증협회의 성립을 장려하는데 있어서의 원조와 지도의 강화;

"7) 이자율의 특권, 신속한 대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비즈니스 현금 흐름에서의 상환 조정, 차용자의 담보재산 부족에 대한 정부 신용담보로의 효과적인 대체 등을 포함하는 더 낮은 자금조달 비용에 관한 조항

"8) 곤궁에 처한 기업의 상호 구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특수 재난의 대비와 같은 조치의 제정을 통한 파산 예방에 관한 조항;

"9) 정보 보급 캠페인과 기업가정신/기업 (entrepreneurship) 교육 활동의 강화;

"10)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세금공제(tax credit)와 다른 세금 및 관세 인센티브에의 쉬운 이용의 효용;

"11) 제품 시험과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및 상업화 기술

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지원 조항

"12) 적합한 정부 기관을 통하여:

"a) 중소기업(MSMEs)의 운용 지원을 위한 더 많은 기반 시설 및 편의 시설의 제공

"b) 창업 또는 확장 회사에 공간과 설비 및 작업공간의 공동 사용, 고급 영리 사업에 필수적인 일상적 경영지원 서비스, 혁신적이고 가치있는 중소기업(MSMEs)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적 원조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구적 시설, 과학기술부, 그리고 다른 적절한 정부주체와 유기적으로 소기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운용하고 관리한다;

"d) 중소기업(MSMEs) 발전을 위한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계를 제공;

"e) 필리핀 중소기업(MSMEs)에 대한 통계 데이터뱅크를 수집하고 통합;

"f) 새로운 중소기업 센터들을 세우고, 지방의 중소기업(MSMEs)에 다음의 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기존에 설립된 중소기업 센터를 활성화한다 :

"i. 모든중소기업(MSMEs)의 등록신청서를 수락하고 의결(act on)한다

"ii. 등록절차를 효율화하며 지방 기업 설립 시에 신속한 등록을 용이하게 한다;

"iii. 중소기업(MSMEs)의 발전과 프로모션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와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iv. 사업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실현가능성, 자금 조달, 경영, 능력구축, 인적 자원, 마케팅, 그리고 중소기업(MSMEs)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과 발전 프로그램, 교육, 조언, 자문을 행한다;

"v. 사업 개념화와 실현가능성, 자금조달, 경영, 그리고 중소기업(MSMEs)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에 대한 방향과 발전 프로그램, 교육, 조언, 자문을 제공한다;

"g) 본 법에 규정된 감독 위원회를 통하여 민간부문활동뿐 아니라 모든 관련 정부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입법이 미치는 영향과 경과를 포함하는 지방 중소기업(MSMEs)의 지위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h)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계획 (MSMEDP)의 이행정도를 조정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며, 필요시에는 국내외 환경을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을 실시한다

"i) 개괄적으로,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SEC. 10. 개정된 Section 9은 Section 8로 변경되었고,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8. *위원회 사무국으로의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사무국(bureau)의 지정*

중소기업 발전 사무국(BSMBD)은 이하에서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사무국(BMSMED)으로 부르며, 향후 위원회 사무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와 기능을 갖도록 지정된다:

"x x x"

SEC. 11. 개정된 Section 9 뒤에 신설된 section 은 Section 9 가 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C. 9. *할당.* - 위원회는 활동 및 운영비를 위하여 이 법의 승인 직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General Appropriation Act

에 규정된 바대로 무역산업부(DTI)의 승인을 받아 매년 별도의 재산을 할당 한다. 위원회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다."

SEC. 12. 개정된 본 법 Section 10은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10. *현존하는 중소기업 프로그램과 기관들의 합리화*

-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MSMED) 위원회는 중소기업(MSMEs)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된 심사(review)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후 의회와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EC. 13. 개정된 동법 Section 11은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11. - *소기업 보증 및 융자 법인의 창설.*

소기업 보증 및 융자법인으로 알려진 법인은 이하에서 소기업 법인으로 부르며, 자금 조달과 정보 서비스, 교육 그리고 마케팅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중소기업(MSMEs)을 원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SEC. 14. 동법 Section 11 뒤에 삽입된 sub-section은 다음과 같다:

"SEC. 11-A.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소기업법인의 권한은 다음의 11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부여된다:

"a) 무역산업부 장관 ;

"b) 재무부 장관

"c)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MSMED)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민간부문대표자;

"d) Corporation Code의 Section 24에 따라, 비례분배로서 선출된 7명의 소기업법인 보통주주 대표;

"e) 상임 위원(ex-officio member)이자, 이사회의 부회장직을 수행하는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 대표.

" 대통령은 이사회 구성원 중 회장을 임명해야 한다.

" 상임 위원을 제외한 임명된 이사회 모든 구성원은 재임명없이 3연속 기간 재직한다._사임하거나 사망 또는 정당한 이유로 해임된 구성원을 대신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은 만료되지 않은 남은 임기만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아래의 권한을 갖는다:

"a) 이 charter의 조항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정하고 소기업법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법률, 규칙 그리고 규제들을 규정, 수정 또는 폐지한다;

"b) 필요하고 편리하다고 간주되는 지점, 기관 그리고 자회사 등을 설립한다;

"c) 전부 또는 부분이건, 어떤 요건 또는 책임이든, 소기업법인에 대하여 찬성이든 반대이든, 이자, 벌금, 요금 그리고/또는 과세를 해당 조례(by-laws)와 필리핀 중앙은행 규칙에 따라 조정하거나 면제한다;

"d) 원본을 증명하는 주권에 인쇄되는 무-의결 선호주(株)의 특징을 정한다;

"e) 소기업법인의 취지를 실행하는데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f) Republic Act No. 6758과 행정관리예산국(Budget and Management)이 발행한 Series of 1989_ Compensation Circular No.10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조직적인 구조, 소기업법인의 직원의 형태를 제공하고, 고용인들에게 월급, 수당(allowance), 기타 부가적 급부(fringe benefits)를 확대하여 제공한다.

SEC. 15. 동법 Section 11 뒤에 신설된 sub-section은 다음과 같다:

"SEC. 11-B *법인의 구조와 권한* - 소기업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행정상 무역산업부에 소속되며,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MSMED) 위원회의 정책과 감독에 따른다;

"b) 마닐라(Metro Manila)에 그 본사(principal offices)를 두며, 필요시엔 언제든지 지방에 지점을 만들 수 있다

"c) 법인법(Corporation Code)으로부터 법인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모든 권한-이 법의 목적 달성에 부수하거나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은 필리핀 중앙은행이나 증권거래 위원회에 의해 발행된 규정이나 규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과 의무를 가진다 :

"a) 재정과 산업기술면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MSMEs)이 되도록하는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b) 자격 있는 중소기업(MSMEs)에 모든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은 또한 도매 리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

"c)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은 이 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 년 동안 이 요건을 따라야 한다
소기업법인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기간(term)과 조건에 따라서 자격 있는 중소기업(MSMEs)이 융자를 얻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d) 부동산 및 동산을 보유, 취득 또는 획득, 소유하고, 그 후 필요한 개선안을 소개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할 시에 위의 재산을 매도, (양도)저당, 채무를 지우거나 처분

한다.

"e) 대체적 담보재산(alternative collaterals)을 승인하여 대체 융자 평가 모델을 실행하는 수단과 방법을 실행한다;

"f) 국내외의 보조금과 기부금을 신청하고 수취한다.

"g) 주식, 채권, 재무부단기증권(treasury billes), 무담보채권(debentures), 유가증권(securities), 그리고 유사형태의 정부, 정부기관, 대행기관, 또는 어떠한 정부 재정시설의 부채의 보유, 취득 또는 획득, 소유, 투자 또는 재투자를 한다.

SEC. 16. 개정된 동법 Section 12는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12.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의 자본구성과 자금제공*

-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은 100억 페소 (P10,000,000,000.00)의 자본금에 관한 권한이 있다. 10억 페소(P1,000,000,000.00)의 초기자본은 필리핀 토지 은행(LBP), 필리핀 개발은행(DBP)이 각각 2억 페소(P200,000,000.00)씩 보통주의 주식투자(equity investment)의 형태로 기부한 공동출자로 성립된다.

사회보장시스템(SSS)과 정부지원 보험시스템 또한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을 위해 2 억 페소씩 지원하도록

한다. 소기업의 자본은 각 주당 100 페소(P100.00)의 가치를 지니고 80,000,000 의 보통주와 20,000,000 의 우선주로 나누어 진다 : 단 Executive Order No.233, Series of 2000, Executive Order No.19, Series of 2001 에 의해 소기업에 통합된 KKK Guaranty Fund 의 자산에 대하여(against) 발행된 것을 포함하고 이미 인수된 것을 포함하는, 발행된 보통주를 조건으로 하며 : 나아가, 개정된 Republic Act No. 6977 에 따라 발행된 우선주의 주주들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추가 주식(equity)은 기존 정부 기관의 초과 또는 미사용 자금, 쌍방 또는 다원적 공공개발지원자금, 정부 소유의 혹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으로부터 인수, 그리고 민간 재정기관과 기업의 투자에 따른 신탁 기관로부터 발생한다.

""자본 조성을 허용하기 위해서,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은 이 개정안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의 이익배당 수행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갖는다. 그 후에, 순이익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익배당지급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으로 보류해야 한다."

SEC. 17. 개정된 동법 Section 12 뒤에 신설된 section은 다음과 같다:

"SEC. 13.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감독과 심사에 따라 그 개발 목표를 정한다"

"SEC. 14. *벤처 캐피털과 소액금융신탁기금(Micro Finance Trust Fund).* -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은 중소기업(MSME)부문에 도움이 되는 사업기회 증진 목적의 벤처 캐피탈과 소액금융신탁기금의 창설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액을 마련할 수 있다. 벤처 캐피탈 자금은 주로 벤처 캐피탈 금융, 특히 기술지향적 산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소액금융신탁자금은 자금 부족에서 벗어나려는 초소형, 소형 기업에 담보재산면제 확립과 운용자본(working capital)융자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 18. 개정된 동법 Section 13은 이하에서 Section 15로 변경되었고,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15. 초소형, 소형, 중형기업으로의 의무적 신용자원의 배분*- 본 개정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 앞서 필리핀 중앙은행 규칙에 명시된 모든 대출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이든 민영기관이든, 초소형, 소형기업의 자신들의 직전 분기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근거한 총 융자 포트폴리오의 최소 8%를 마련해야 하고, 그것을 이하에서 정한대로 중소기업(MSME) 여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자격 있는 중소기업(MSMEs)에 대한 여신의 실질적 확대

"b)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 주 우선주의 실질적인 수

"c) 중소기업(MSMEs)에의 융자를 위한 실질 금융기관의 대규모 임대

"d) 수취 가능한 중소기업의
매수(purchase)/할인(discount)

"e) 본 법 Section 3 에 따르는 수출, 수입업자와 국내 무역업자에게 허가되는 융자

"f) 소기업법인이 제공할 수 있는 청약/매수.

"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 조항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규칙을 제정한다: 정부 어음, 증권 및 양도할 수 있는 문서 (instrument)를 매수한 경우에는 앞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필리핀 중앙은행은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에, 기술한 산업에의 의무적 신용배분을 초과하는 융자를 하도록, 예컨대 은행의 적립금/예비금(reserve) 요건을 삭감하여,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창설할 수 있다."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MSMED) 위원회는 중소기업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중소기업(MSMEs)의 융자 신청을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MSMED) 위원회에 연4회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중소기업(MSMEs)에의 의무적 신용배분에 관한 위

의 조항들에 대한 은행의 이행, 불이행, 제재를 그 내용으로 한다.

"필리핀의 공유지를 획득하거나 보유할 자격이 없는 대출 금융기관들은 재판으로서 모기지실행절차, 청산절차(receivership), 강제집행(enforcement) 및 기타 소송절차를 통해 저당 잡힌 동산의 매매에 입찰 또는 참여할 수 있는데, 위 절차는 오로지 차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 그리고 실제 소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한한다. 단, 어느 경우에도 재산의 소유권이 대부기관에게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대출 금융기관이 입찰에 성공한 자라면, 앞에서 언급한 5년 동안 적절한 법률에 따라 차용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 권리를 자격 있는 필리핀 국가에 이전할 수 있다."

SEC. 19. 개정된 본 법 Section 13 뒤에 Section 16, 17, 18이 신설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C. 16.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주간(week)*

- 국내에 설립하는 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계속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소기업의 진흥, 성장 그리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공표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매년 7월 둘째 주는 "초소형, 소형 및 중형 기업 주간"으로 선포한다._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MSMED) 위원회, 무역산업부, 그리고 소기업법인(SB Corporation)은 본 행사를 위한 활동들을 준비할 공동책임을 가진다.

"SEC. 17. *우수 중소기업(MSME)에 대한 대통령상.*

-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하는 우수 중소기업과 훌륭한 중소기업 영업에 대한 대통령상은 중소기업 주간 동안 100% 필리핀인이나 공동 경영자가 소유하는 회사에게 수여된다."

"SEC. 18. *국회 감독위원회.*

- 이 법의 실행을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개발의 국회 감독위원회(COC-MSMED)가 있으며, 상원의 경제위원회와 하원의 소기업 및 기업개발 위원회 의장을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상원과 하원 각자 5명의 구성원을 두는데, 상원 통상위원회; 은행, 재정 중개업자 및 통화(Appropriations) 위원회; 세출 위원회 의장을 포함한다: 단, 5명의 상원의원 중 2명과 5명의 하원의원 중 2명은 상원과 하원의 소수당의 원내총무에 의해 지명된다.

"COC-MSMED는 이 법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전반적 체계를 세우고, 절차적 내규를 수립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기존 상원과 하원의원 중에서 충원한다."

SEC. 20. 개정된 본 법 Section 14 은 Section 19 로 변경되었고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x x x"

"불이행의 제재는 중소기업(MSME)부문의 개발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징수한 벌금중 90%는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MSMED) 위원회의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BSP(필리핀 중앙은행)에 경상비로 충당하도록 한다."

SEC. 21. 개정된 본 법 Section 14 뒤에 신설된 section은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SEC. 20. *규칙과 규제의 실행*- 무역산업부는 이 법의 승인 후 90일 이내에 초소형, 소형 그리고 중형 기업 발전 사무국과 다른 관련 경제부처, NGO, 중소기업(MSMEs) 진흥에 관여하는 민간부문와의 자문을 통해 본 법 조항의 실행에 있어 필요한 실행 규정과 규칙(IRR)을 정한다 이 section에 의거해 발행된 실행규정과 규칙(IRR)은 일반 배포되는 전국 신문의 공표 30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 22. *가분 조항*- 본법의 조항들은 분리가능함을 선언한다. 만약 본법의 어떤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된다해도, 나머지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SEC. 23. *취소 조항*-

본 법과 상충되는 모든 법률, 행정명령, 규정과 규칙들은 무효가 되거나 적절하게 개정한다.

SEC. 24. *효력조항*

- 본법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전국에 배포되는 신문에서 공표한 이후 15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한다.